

■ 인지세 안내

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■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·방법 ※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구분	내용
과세대상	부동산 분양계약서
세액	거래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
납부기한·방법	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,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전자수입인지 구입처	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· 우체국 ·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에 첨부

■ 인지세 가산세 ※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

구분	법정납부기한 후 (3개월 이내)	법정납부기한 후 (3개월초과~6개월이내)	법정납부기한 후 (6개월 초과)
가산세	미납세액의 100%	미납세액의 200%	미납세액의 300%

■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

오프라인 이용방법

- 1 우체국 · 은행방문(방문전 문의 요망)
- 2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
- 3 전자수입인지 발급

온라인 이용방법

-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인터넷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-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- 3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- 4 구매 : 납부정보 입력
 용도 : 인지세 납부
 과세문서 종류 :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 금액 : 150,000원 / 건수 : 1건
 모두 확인 후 결제

- 5 출력
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(재발행 불가)